

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

2017-안전-65



일선기관명	관할구역	전화번호
서울지역본부	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(7,8층)	02-6711-2847
서울북부지사	서울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~8층	02-3783-8316
강원지사	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 공제회관2층	033-815-1011
강원동부지사	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	033-820-2511
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	051-520-0523
울산지사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	052-226-0522
경남지사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	055-269-0555
경남동부지사	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양산노동조합 청사 4층	055-371-7521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8,9,11층	062-949-8743
전북지사	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전주지방노동청 4층	063-240-8533
전북서부지사	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	063-460-3624
전남동부지사	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061-689-4951
전남지사	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 개발공사 7층	061-288-8705
제주지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사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	064-797-7504
충부지역본부	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	032-510-0512
경기지사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3층	031-259-7124
경기북부지사	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 의소 1층	031-828-1951
경기서부지사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제이엘컨벤션웨딩홀 2층	031-481-7511
경기동부지사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	031-785-3321
경기중부지사	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	032-680-6518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648 호수빌딩 20층	053-609-0522
대구서부지사	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	053-650-6832
경북동부지사	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054-271-2036
경북지사	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054-478-8012
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	042-620-5614
충북지사	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빌딩 3층	043-230-7121
충남지사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041-570-3423



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

“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”

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!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

이란?

- ▶ 모기업(원청) 주도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‘**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**’을 수립·시행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·물적자원을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을 개선함으로써 협력업체 산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등 원·하청 안전보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.
- ▶ 협력업체는 모기업(원청)에 비해 근로자 안전·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협력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원청의 협력업체 지원활동을 필요로 합니다.

※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협력업체에 대한 의무(**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**)이행을 공고히 하는 한편, 모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대·중소 기업 안전보건 공생발전을 이루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.



안전보건 **공생협력** 프로그램 개요

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대상

- **(대상)** 100인 이상 모기업* 및 협력업체
 - *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포함
 - 사내 협력업체는 전체, 사외 협력업체는 자발적 참여업체 단, 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포함

「유해·위험물질 제조·사용 사업장」의 범위

- ①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 물질(51종)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·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
- ② 고독성(발암성·생식세포 변이원성·생식독성) 물질(78종) 제조·사용 사업장
- ③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, 클로로포름, 시안화수소, 메틸알코올,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·사용 사업장

- **(업종)** 제조업(전기업 포함), 서비스업(운수·창고·통신업 포함)
- **(선정)**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선정

사업대상의 선정 기준

- ①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사업장
-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- ③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,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 및 재해다발 사업장
- ④ '12 ~ '16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사업장

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

- 참여 신청기간 : '17. 3. 2(목) ~ 3. 15(수), 2주간
- 접수처 : 모기업(원도급업체)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(지사)
- 심사 및 승인 : '17. 3. 31(금)까지 완료

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및 혜택

- 전국 상위 10% 모기업과 사내·외 협력업체
 - 다음년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'16. 7. 1. 훈령 제186호) 제10조1항7호에 따른 정기 감독 일부 유예가 적용
- A등급 모기업과 사내 협력업체
 - 정부포상(산재예방 유공)시 우선 추천
 - 다음년도 KOSHA 18001 연장 또는 사후심사비 할인(50%)지원
- B등급
 - 인센티브 없음
- 프로그램 참여한 50인 미만 사내 협력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KOSHA18001 실태심사비용을 면제 지원

프로그램 추진 우수 사례

-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(7월중)
 - ※ 세부 일정 확정시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
-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



안전보건공단(www.kosha.or.kr) ⇨ 사업안내/신청 ⇨ 산업안전
⇨ 안전보건공생협력프로그램 ⇨ 추진사례



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



안내·설명회

- 대상 사업장에 설명회 개최 안내[고용노동부, 공단]
- 사업취지, 추진절차 및 내용 등 설명회 개최[고용노동부, 공단]

프로그램 작성

- 협력업체(사내·사외)와 공생협력단 구성[모기업]
- 참여대상 협력업체
 - 사내 협력업체[전체], 사외 협력업체[자발적 참여업체]
 - ※ 단, 유해 화학물질 제조·사용하는 사외 협력업체는 반드시 포함

프로그램 승인 신청·심사 (계획수립 컨설팅)

-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[모기업]
-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, 보완요구, 불승인[고용노동부, 공단]
- 당해 년도 신규참여 사업장에 희망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[공단]

위험성 평가

-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 실시 지원[모기업]
-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(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)

위험성 감소 개선계획 제출·이행

-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[모기업]
- ※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, 예산 지원계획 포함
- 협력업체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지원[모기업]

현장 기술지도

- 프로그램 세부추진방안,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[공단]

프로그램 추진실적 제출

-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[모기업]

확인 기술지도

-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확인[공단]
-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,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

사업추진 결과 등급평가

-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 부여[고용노동부, 공단]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

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

① 공생협력 추진의지

-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

②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

- ① 안전보건 공생협력 방침 · 규정 수립 및 전달 확인의 적정성
- ② 안전보건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
- ③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 · 집행의 적정성

③ 위험성평가 실행수준

- ① 위험성평가 계획(P)
- ② 위험성평가 이행(D)
- ③ 위험성평가 이행확인(C)
- ④ 지속적 개선(A)
- ⑤ 기록

④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평가

- ① 계획대비 이행도
- ② 적용 법규의 준수 정도
- ③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정도
- ④ 만족도 조사 및 환류
 - ④-1.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
 - ④-2. 협력업체 애로 및 개선요구 사항의 반영 수준

⑤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

- ① 자율안전 실행수준 : 참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(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포함) 비율
- ② 재해발생수준
 - ②-1. 참여 사업장의 전년대비 재해를 감소율
 - ②-2. 참여 사업장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

산재예방요율제 안내



산재예방요율제란?

-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해주는 제도
- 적용 대상
 -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
 - ※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, 각각의 사업개시연도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
- 적용 방법

산재보험요율 인하율

- 사업주교육 인정 : 10%
- 위험성평가 인정 : 20%

※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**인하율이 큰 보험료율 적용**하며,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만큼 **일괄 계산**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(관련근거 :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· 시행령 제18조의2(산재예방요율의 적용))

인정 유효기간

- 위험성평가 인정 3년, 사업주교육 인정 1년 (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)

업무처리절차

- 재해예방활동 신청(사업주) ⇨ 재해예방활동 수행(사업주) ⇨ 재해 예방활동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(안전보건공단) ⇨ 보험료율에 반영 (근로복지공단)

「위험성평가」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



「사업주교육」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



위험성평가 안내



위험성평가란?

-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?

-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
-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참조



주소: <http://kras.kosha.or.kr>

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

-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(건설공사를 제외)
- ※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



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 미만의 건설공사

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

-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% 인하 (50명 미만 제조업)
- 인정유효기간(3년) 동안 정부의 안전·보건 감독 예치
-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
-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

클린사업 및 융자사업 안내



클린사업장 조성지원

- 기술·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,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·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

구분	클린사업장 인정(전부개선)	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
지원 대상	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체납이 없는*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• 노동부, 공단, 민간기관 감독·점검·기술 지원 사업장 •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	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• 노동부, 공단 감독·기술지원 사업장 (건설업 제외) • 이동식 크레인·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
지원 조건	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 하여"클린사업장 인정기준"을 충족	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 요인을 개선할 경우
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	사업장 당 2,000만원까지 ※ 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 • 고용주가 사업장(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) •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• 고용노동부에서 강조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소요비용의 50%까지 ※ 단,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 비용의 70%까지 지원	사업장 당 2,000만원까지 (이동식크레인, 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 설비에 중복지원 불가) 소요비용의 70%까지

* 공통요건 : 산재보험보험가입(완납), 신용평가 결과 "양호"



주소: <http://clean.kosha.or.kr>

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

-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·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

구분	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
지원 대상	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•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(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) •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융자금액	• 사업장당 10억원 한도
지원조건	• 연리 1.5%,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
지원 대상 품목 및 유의 사항	•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·장비 • 유해 위험 기계·기구(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산업용 로봇 등) • 분진,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•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, 개선, 방지 시설 • 보호구,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및 설비 • 검사, 진단,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·기구 •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• 안전인중(SOARC)을 받은 기계·기구 및 인중에 필요한 설비·장비 등(공작기계 등 자물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, 기구) • 유의사항 - 법적 안전인중 대상품목은 안전인중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- 설비의 내구성,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 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